警友奉仕 活動 전국으로 확산

재향경우회가 지난 8월 「국가와 경찰을 사랑하는 경우회」라는 조직의 정체성에 걸맞게 「봉사활동의 생활화 계획」을 확정하고 지역사회 봉사를 적극 추진한 이래 전국 각급회가 봉사대를 발대하고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시 경우회**는 권역별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관련 서울경우회는 전지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2인 1조로 구성된 6개조를 관내에서 가장 취약한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부산시 경우회**는 市會에 총 62명으로 구성된 봉사대를 조직하는 한편 각지역회 단위로 교통보조, 방범지원, 자연보호 봉사대 등을 운영, 출퇴근 시간 및 복잡한 대형 행사장의 교통지원, 명절전후 및 연말 연시 주택가와 금융기관 주변 방범순찰, 등산로 및 해수욕장 주변 쓰레기 줍기를 비롯한 자연보호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으며, **경기도 경우회**도 현직 시절의 경험을 살려 산하 30개 지역회별로 봉사대를 조직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등 전국의 모든 시도회 및 지역회 단위별로 경우 봉사대의 활동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치안센터에 근무중인 警友가 민원상담을 하고 있다.

서울경우회, 6개 권역별 청소년 선도활동
서울서부경우회, 치안센터 민원상담관 파견

한편 서울서부 경우회는 전형적인 주거밀집 지역에 기인한 강절도 등 사건이 빈발하는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지난 11월 16일부터 매주 수요일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서부경찰서의 9개 치안센터에 상주하는 경찰관이 식사와 순찰활동 등 3시간의 공백시간 동안 민원상담관 역할을 대행해 주고 있다.

특히 이들 민원상담관은 「경우회」 모자 및 어깨띠를 착용하고, 전화받기 및 신고 접수, 지구대 연락, 지리교시, 민원상담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치안센터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는 회원들중 적임자를 선정하였으므로 대민업무 수행에도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며, 서부 경우회는 이번 치안보조 업무 수행의 지역주민 호응도 등을 분석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민종 서울서부 경우회장은 『경찰업무를 지원하는 봉사활동에 중점을 두고 이번 민원상담관 파견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각종 봉사활동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서 국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단체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DMB 한국교통방송 개국

서울, 경기일대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도로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TBN 한국교통방송이 지난 12월 1일 그 첫 전파를 내보낸데 이어 12월 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도로교통안전회관에서 이대길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 열린우리당 서재관 의원, 허준영 경찰청장, 현성일 경우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방송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DMB 방송시설 완공 기념 테이프 커팅을 시작으로 개국식을 가졌다.

이날 개국한 TBN 한국교통방송은 YTN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DMB 방송사업에 교통전문채널로 참여하였으며, 이미 운영 중인 부산, 광주, 대구 등 전국 7개 교통방송 네트워크 및 구축 중인, 전국 통합 교통정보센터와 교통정보망을 연결하여 서울, 수도권 교통정보는 물론 전국 고속도로, 국도 정보와 기타 기상정보 등을 음성과 데이터 화면으로 실시간 서비스할 예정이다.

한편 이대길 공단 이사장은 『정부의 뉴 미디어 DMB 방송정책에 따라 우리 도로교통 안전공단에서 서울 및 수도권을 가청권으로 하는 교통전문방송을 개국하게 되었다』면서 『전국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공단이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울시내는 물론 경기도 일원에 대한 실시간 DMB 교통방송을 통하여 서비스하게 됨으로서, 보고 들을 수 있는 최상의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TBN 한국교통방송은 이와 같은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대국민 교통편익에 이바지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海警人들 하나로 뭉쳤다!

여수해경 警友會, 전국 海警元老 초청 간담회

여수해경 경우회가 지난 11월 24일 관내 한 연회장에서 제 42주년 경우의 날을 기념하는 元老회원 초청 오찬간담회를 가짐으로서 평생을 해양경찰 발전에 헌신해온 선배들의 功을 기리고, 후배 경우회원 및 현직 경찰관들에게는 귀감의 場을 만들었다.

이번 오찬간담회는 김유평 여수해경경우회장이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0월 15일 제 7회 여수시민의 날을 맞아 34만 여수 시민의 뜻을 담은 지역사회 개발부문 시민상을 수상한 영광을 평소 자신에 대한 적극적인 성원을 베풀어 온 원로 경우들에게로 돌리는 한편 전·현직이 함께하는 자리를 통해 조직의 화합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행사 경비를 전액 사비로 출연하여 마련한 것으로 전임 조규학 회장이 개최했던 원로간담회 이후 2번째 행사인 것이다.

한편 이날 행사는 전현직 해경인들이 오찬을 통해 상호 친목과 화합을 도모함과 아울러 2부행사로 돌산 향일암 및 이 일대를 일주하는 관람시간을 갖고 조직발전과 전현직 유대강화 및 회원상호간의 단결에 주력할 것을 결의했다.

參戰警察會, 안보현장 踏査

참전경찰유공자회는 최근 전국의 임원단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인천 및 경기 용인, 경우회 중앙회 등지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임원 연석회의 및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조직의 발전을 결의했다.

화제의 인물

"소방시설 종합서비스 책임진다"

玄大植 회원, (주)다산 운영

現職시절 경찰청 외사관리관실과 교통지도국 등지에서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소임을 다해 왔던 玄大植 회원이 소방시설 공사 및 유지관리업과 홍해삼 양식업에 투신, 새로운 제 2의 인생을 개척하며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화제다.

「책임완수, 고객감동, 창의력 발휘」를 3대 경영방침으로 정하고 全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업계 1위를 목표로 정진하고 있는 玄 회원과 (주)다산 종합엔지니어링은 『일반 및 고층빌딩, 판매시설, 병원, 특수분야의 안전진단과 설계, 감리, 관리유지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소방시설의 관리와 화재 예방활동에 전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9년 5월 설립된 다산 엔지니어링은 같은 해 경기지사를 개설하는 한편 금년 1월 대전지사와 전남지사를 추가로 설립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확장과 특유의 경영마인드로 국내에서는 손꼽히는 굴지의 소방 전문업체로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 동안 문명의 발달에 따라 인간의 생활공간은 복잡 다양하게 변해 가고 있으나 인명 및 재산의 보호와 안전의식은 이에 따르지 못했으며, 특히 소방안전분야는 생산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유로 소외되어 관심 밖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는 玄 회원.

현직 시절부터 틈틈이 전문분야에 대한 학구열을 불태워 명지대학교 대학원에서 공학 석사과정과 박사과정까지 이수한 그는 끊임없는 연구자세와 성실성으로 경기경찰청, 경찰대학,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비롯, 상당수 일선 경찰관서, 공공기관, 언론기관, 금융 및 정부투자기관, 종합의료기관, 학교시설 등 1백 30여곳의 대형기관들에 대한 소방공사 마무리는 물론 약 3백 70여 기관에 대한 방화관리를 해오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소방분야 이외에도 玄 회원은 홍해삼 인공종묘 생산사업에도 뛰어 들어 종묘의 대량 생산에 성공한 인물이 되고 있다.

홍해삼은 초기먹이와 수온적응 등이 까다로워 국내에서의 대량 생산에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그는 지난 5월 중순부터 제주도 근해에서 잡은 홍해삼중 우수한 것을 선별해 축적된 노하우로 양식을 실시, 현재 종묘 2백만마리를 키우고 있다.

생활법률상식 - 대법원판례 2005. 9. 9 선고 2005다 23773 판결(전부금)

주택임대차보증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지? 매도한 경우 임차인의 채권확보 수단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채무자인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뿐 그가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소유자로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할 권능은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며, 위와 같이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전부채권자에 대한 보증급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결국 임대인은 전부금 지급의 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임차인의 채권확보수단은

임대인의 전부금 지급의무를 승계한 당해주택 매수자에게 하여야 할 것이다.

○ 주택매수자의 확인사항

주택매수자는 적어도 당해주택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이 있는지 여부와 등기사항을 확인하여 담보설정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법조】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임대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할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3.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제1항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3항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자료정리 : 김진(前 서울성동署 방범과장)〉